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구리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[구리-파생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3.11 -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한국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키움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12.20	제6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추 가	<p>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제 34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</p> <p>2.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</p> <p>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</p>

		행
2012.12.20	제12조 (투자신탁회계기간)	<p>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</p> <p>2. 제 1 호의 회계기간 이후의 회계기간: 최초회계기간 익일로부터 매 1년간 추 가</p> <p>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</p> <p>2.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: 제1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2012년 12월 31일</p> <p>3. 제2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: 제2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1년간</p>
2012.12.20	제36조 (운용 제한)	<p>①-2-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</p> <p>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①-2-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_____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
		투자하는 경우	
2012. 12. 20	제39조 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	②-1.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.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.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비용 10. 법 제 442 조에	②-1. 증권 등 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증권 등 자산 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가격정보비용 8. 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 9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.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비용 11.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비용

		11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비용 12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	12.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3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4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 2 항제 12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④제 3 항호에서 정하는 “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”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 1. 건당 결제비용 (transaction fee) 2. 보관비용 (safe-keeping fee) 3. 기타 부수비용 (out-of-pocket expenses: physical registration, DR conversion, tax reclaim, income collection 등)
--	--	--	--

<p>2012. 12. 20</p>	<p>제40조 (투자신 탁의 해 지)</p>	<p>①집합투 자업자는 다음 각호 의 경우 이 투자신 탁의 신탁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 투 자신탁 수 익증권의 상장이 폐 지되는 경 우. 이 경 우 집합투 자업자는 상장폐지 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이 신탁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집합투 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 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금 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이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자업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이 투 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. 다 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 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그 해 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 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 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</p> <p>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 속하는 동안 추 가로 설정(모집) 할 수 있는 투 자신탁에 한함.</p> <p>4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 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 속하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</p>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	<p>신탁계약을 해지하 여야 한 다.</p> <p>추 가</p> <p>추 가</p> <p>②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하 고자 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 는 신탁계 약의 해지 일(이하 “해지기 준일” 이 라 한다) 로부터 1 월 전에 당해 신탁 계약의 해 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 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 을 증권시 장에 공시 하고 제 48 조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.</p>	<p>경우. 다만, 존 속하는 동안 추 가로 설정(모집) 할 수 있는 투 자신탁에 한함</p> 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 탁을 해지하여 야 한다. 이 경 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 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</p> <p>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</p> <p>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</p> <p>3.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</p> <p>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</p> <p>5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 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 다.</p> <p>③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 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지사 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</p>
--	--	--

		추 가	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2012. 12. 20	제41조 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 종료일.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
2012. 12. 20	제48조 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	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)
		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	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,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

	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	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